I·SEOUL·U

2018년 20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18. 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8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회의개요〉

◆ 일　시 : 2018.11.14.(수) 10:00 ~ 11:50

◆ 장　소 : 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 심의위원 : 김지미, 권혜진, 안희철, 한상희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안　건 : 이의신청 4건

- (2018-71)특정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소요되는 예산 및 집행내역
- (2018-72)'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시정권고 통보㈜-○○○○뱅크' 결재문서
- (2018-73)여성·건강카페 조성사업 관련 지원대상 선정조건 해당 제출문서, 지원금 사용 증빙서류 및 영수증
- (2018-74)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거하여 내부감사로 징계 처리한 현황(비리내용, 징계수위, 수집경로, 조사기간, 변호인 동행여부 등)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기각
- 인용
- 부분인용
- 부분인용

【 의안번호 2018-71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소요되는 예산 및 집행내역

※ 회의내용 중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입니다. 오늘 심의회는 심의위원으로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이의신청 4건입니다. 매 건마다 상정안건에 대해 간사가 보고를 드리고 주심위원님께서 해당안건의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각 주심위원님들께서는 해당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안을 정리해 주시면 최종 결정사항은 위원장인 제가 선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과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늘 안건이 4건으로 좀 많아서 부득이하게 주심위원님께서 일단 질의·응답을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10여 분 정도 가까이 해서 질의·응답을 20분 안에 끝내고, 의견 취합하는 과정 5분 정도 해서 30분 안에는 하나의 안건을 끝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위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71호 교통방송 라디오국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안건 소관부서 팀장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TBS 교통방송 라디오국 편성팀장 ○○○입니다.

〈○○○ 주무관〉

○ 저는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이라고 합니다.

〈○○○ 위원〉

○ 간사는 소관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71호 교통방송 라디오국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TBS ‘○○○의 ○○○○’ 프로그램 진행자 ○○○에게 소요되는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프로그램 진행자 ○○○에게 소요되는 예산 및 집행내역은 특정인의 소득내역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며, 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

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예산의 투명성 차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으로 요청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방금 간사가 낭독한 안건 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팀장〉

○ 아니요.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 위원님께서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전에 받은 자료는 자료참고로 2017년 교통방송 결산서, 그리고 2018년 교통방송 예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산서에는 특정을 하지 않고 사회료라는 항목으로 잡혀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팀장〉

○ 네, 그 사회료에는 저희 TBS에 출연하는 외부사회자의 모든 사회료가 통합된 액수입니다.

〈○○○ 위원〉

○ 그래서 거기에는 개인정보가 특정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자료는 아

닌 것이죠?

〈○○○ 팀장〉

○ 그렇습니다.

〈○○○ 위원〉

○ 예산서에는 특별히 사회료가 따로 항목이 잡혀있지는 않던데요, 그 역시 공개 가능한 자료인 것이죠?

〈○○○ 팀장〉

○ 그렇습니다.

〈○○○ 위원〉

○ 오늘 제작기획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비공개대상이 되는 자료인 것이죠?

〈○○○ 팀장〉

○ 네. 청구인이 특정인에게 지급된 내역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개인정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

○ 특정인의 출연료 연봉은 사실 개인정보로 공개가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제3자 의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제가 관련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공영방송 BBC의 경우에 정관개정으로 2017년부터 연간 15만 파운드가 넘는 방송인에 대해서는 출연료를 특정하지 않고 구간별로 5만 파운드씩 해당 구간을 공개를 하도록 해서 96명이 실명과 구간정보를 공개했습니다.

○ 사실 이것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지만 TBS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 예산이 서울시에서 얼마고 몇 %를 지원 받습니까?

〈○○○ 팀장〉

○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 받습니다.

〈○○○ 위원〉

○ 그것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되겠죠. 국내 다른 방송에서는 출연료 공개를 한 적이 있나요?

〈○○○ 팀장〉

○ 지금 제가 알기로 2009년 정도에 MBC에서 국정감사 때문에 공개를 했다가 개그맨 ○ 모씨의 강한 항의가 있었고 기사화가 많이 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KBS, MBC 어느 사도 공개를 하지 않고, 국정감사 시에서도 실명이 없는 자료로 대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사실 '이 출연료가 얼마다'라는 것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가 돼서 이미 기사로 많이 나간 건이기는 합니다.

○ TBS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니까 다른 데에서는 공개하지 않지만 연간 얼마 이상의 고액출연료를 받는 사람들은 금액을 정확히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실명과 함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TBS에서 있었습니까?

〈○○○ 팀장〉

○ 국정감사나 서울시의회의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 동안 법

률 로펌이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게 개인정보 보호에 맞다는 자문을 받아서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 그리고 제3자 의견서도 첨부했지만 본인의 강한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가 국감에서도 없습니다.

〈○○○ 위원〉

○ 아까 BBC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청구인이 구간으로 나누어서 비실명으로 공개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팀장〉

○ 저희가 국감에서는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총액으로는 이미 제출을 했고, 그것이 의원 분들에게 다 자료가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간보다도 더 자세한 자료가 이미 의원님들에게 제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의원한테 제출한 그것은 공개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 팀장〉

○ 그것은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로 공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니까요.

〈○○○ 팀장〉

○ 네, 구간 정도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래서 구간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이죠?

〈○○○ 팀장〉

○ 네.

〈○○○ 위원〉

○ 다른 방송국과 출연료 정보교환은 안 합니까?

〈○○○ 팀장〉

○ 그것은 방송사들 간에도 절대 영업비밀입니다.

〈○○○ 위원〉

○ 시장님께서 기여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받는 것이라고 인터뷰도 나갔죠. 사실 금액이 많다는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 위원〉

○ 상대방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식별 가능한 자료들 즉,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가리면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취지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주무관〉

○ 제가 보기에는 법 조문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라고 되어 있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중에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인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아니면 공개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의견을 적으신 것 같습니다.

〈○○○ 위원〉

○ 개인정보라는 것은 결국 식별 가능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상황에서 받는 수당만 나가게 된다면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 주무관〉

○ 그런데 청구인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궁금한 것은 '○○○' 그 특정인에 대한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여러 출연자가 있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청구인은 ○○○의 프로에 얼마가 소요되느냐가 궁금한데 그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6호의 사유로 비공개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 주무관〉

○ 제가 관련 행정심판례도 첨부했는데, 특정인의 소득에 관한 사항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고, 개인정보라는 것이 단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이 차원이 아니라 이게 밝혀질 경우에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인 경우에는 다 개인정보로 법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 위원〉

○ 붙임2 말씀하시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 팀장〉

○ 네, 저희는 일단 이분 청구인이 원하시는 것이 ○○○이 저희 회사에서 받아가는 금액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전체 프로그램 예산이라면 저희도 공개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하시는 것이 곧 ○○○의 개인소득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 위원〉

○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금액부분이 블라인드 처리 되어 있는 이 제작기획서는 공개가 가능한 것이죠?

〈○○○ 주무관〉

○ 네. 그렇게 블라인드 한 상태로는 공개가 가능하지만,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은 아니라서 의미가 없어요.

〈○○○ 위원〉

○ 맞습니다.

〈○○○ 위원〉

○ 이 청구가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들어온 겁니까?

〈○○○ 주무관〉

○ 이의신청은 확실히 그 이후인데, 아마 청구도 아시고 요청한 걸로 추측됩니다.

〈○○○ 위원〉

○ 비공개 사유를 왜 7호가 아니고 6호로 하셨습니까? 물론 개인정보이기는 한데 저는 그것보다 영업상의 비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7호는 왜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 주무관〉

○ 영업상의 비밀 측면도 침해된다고 같이 첨부는 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침해되는 사항이라 판단했습니다.

〈○○○ 위원〉

○ 개인정보이지만 누구에게 예산이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시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업상 비밀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야 되니까 여쭤보았습니다.

〈○○○ 주무관〉

○ 행정심판례도 보시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라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경쟁자 중에 누구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한 공익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만, 아까 그 부총장처럼 이렇게 특정인만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익을 더 보호하는 측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저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금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소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잘못이죠.

〈○○○ 위원〉

○ 저는 공개의 실익은 없으나 금액이 블라인드 처리된 제작기획서라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개의 실익은 청구인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 위원〉

○ 부분공개라고 하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그 청구취지를 보고 청구취지의 일부인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청구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서 부분공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청구취지가 명확하게 ○○○에게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제작기획서의 사회라고 블라인드 처리된 첫 줄만 그 사람이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각이냐 인용이냐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교통방송에서 시민을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프로그램 진행자의 사생활의 비밀 혹은 자유과 영업상의 비밀 모두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여부는 비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지만 연간 2억원 이상 출연료는 받는 사람들은 실명과 구간을 공개이라도 공개하는 쪽으로 전향적인 정책을 가져가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

○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비공개 사유로 7호도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저도 특정인 ○○○ 개인이라면 식별 가능성이 생겨서 비공개에 해당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민감한 개인정보는 아니고, 그냥 개인정보라고 쓰시죠.

〈○○○ 주무관〉

○ 네. 관련판례에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 위원〉

○ 그렇죠. 민감정보는 아니죠. 참고자료인 예산서, 결산서는 청구가 들어오지 않고 사전에 홈페이지나 어디를 통해서 미리 공개가 되는 자료입니까?

〈○○○ 팀장〉

○ 네. 서울시 관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 민원인 분이 이 건은 이의신청 외에 한 건 더 청구하셨는데, ○○○ 씨의 3년치 사회료 예산·결산서와 교통방송 예산·결산서를 함께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 전체에 대한 사항은 공개할 수가 있다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저도 앞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7호를 추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 위원님의 권고에 더해서 말씀 드리면 교통방송이 서울시 예산이 100% 투여되는 것이라서 예산이나 결산을 시민들한테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드리겠습

니다.

○ 그러면 집계 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018-71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팀장〉

○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8-72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시정권고 통보 (주)○○○○뱅크' 결재문서

※ 회의내용 중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72호 공정경제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안건 소관부서의 주무관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경제과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담당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 위원〉

○ 간사는 소관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72호 공정경제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주)○○○○뱅크의 선불직 할부거래업체 시정권고 통보 결재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법률위반으로 시정 권

고한 내용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현재 해당업체의 할부거래업 폐업으로 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주무관님은 방금 설명 들은 안건 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주무관〉

○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 위원님께서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안녕하세요? 일단은 시정권고통보서 이것은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현재 소송 걸려있는 것은, 참고자료 판결문을 보면 이게 소송이 들어가 있잖아요?

〈○○○ 주무관〉

○ 네.

〈○○○ 위원〉

○ 이게 정확히 이 정보에 대한 소송인가요?

〈○○○ 주무관〉

○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죠. 업체에 대해서 시정권고한 내용을 공개를 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뱅크도 저희 시 소관업체였기 때문에 이 정보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

○ 1심에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라고 판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는 뒤집혔어요. 그렇죠?

〈○○○ 주무관〉

○ 네,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 위원〉

○ 항소심 판결이 11월 9일 날에 났어요.

〈○○○ 주무관〉

○ 네.

〈○○○ 위원〉

○ 서울시는 상고를 하실 예정이신 것이죠?

〈○○○ 주무관〉

○ 네, 법률지원담당관실하고 더 논의를 해 봤는데, 2심 판결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났고, 법률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고심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검토해 보고 상고 진행할 수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 위원〉

○ 처음에 비공개 결정을 했던 이유는 7호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업체는 폐업됐죠?

〈○○○ 주무관〉

○ 네.

〈○○○ 위원〉

○ 언제 폐업됐습니까?

〈○○○ 주무관〉

○ 이 업체에 저희가 '14년도에 시정권고를 했고, '15년도에 경기도로 이관을 했고, '16년도에 폐업을 했습니다.

〈○○○ 위원〉

○ 이 업체 쪽에 혹시 제3자의 의견을 물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 주무관〉

○ 네, 경기도 쪽으로 문의해봤는데,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있지 않아서 따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 사실 폐업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공개를 안 하시는 것은 영업중인 다른 업체들까지 고려를 하시는 겁니까? 어떠십니까?

〈○○○ 주무관〉

○ 지금 진행되는 소송 건 자체가 폐업여부를 떠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이다 보니까 통일성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

○ 폐업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이 정보가 공개됐을 때 업체한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주무관〉

○ 상조업 특성 자체가 해약환급에 대한 문의가 갑자기 많이 늘고, 그것에 따라서 업체가 어려워지는 영향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

○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것하고 지금 정보공개 청구한 것하고 다른 것이죠? 소송에 걸려있는 것은 할부거래업체가 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명단과 위반행위 유형을 공개하라는 것이고, 지금 이 사람이 청구하는 것은 시정권고통보 문서 한 장을 공개하라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내용이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시정권고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시정권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포함이 됐다라고 본 겁니다.

〈○○○ 위원〉

○ 지금 소송 걸려있는 것은 만약에 시정권고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A는 어떤 유형, B는 어떤 유형인지이고, 지금 정보공개 청구 들어온 것은 그 중에 ○○○○뱅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정권고를 받았는지 하는 문서 하나를 청구한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만약에 이 문건이 공개되면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주무관〉

○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사후적으로는 소송에 걸린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공개 청구 받은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고, 여기는 폐업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 주무관〉

○ 네, 영업중인 업체 포함하고 있고요, 또 폐업을 한 업체들도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

○ 보통 시정권고 사유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주무관〉

○ 시정권고 할 수 있는 내용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선수금 관련해서 고객들이 납입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예치기관에 예치를 해야 하는데, 이 예치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던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던가,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던가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이 청구인은 주식회사 ○○○○뱅크가 시정권고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 주무관〉

○ 정보공개법에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목록이 다 뜹니다. 옆에 청구버튼을 눌러서 청구하면 청구서에 기재된 양식으로 접수가 됩니다.

〈○○○ 위원〉

○ 그러면 적어도 청구인은 어떤 업체들이 시정권고를 받았는지 목록은 알 수 있는 것인가요?

〈○○○ 주무관〉

○ 예전 목록에는 제목에 업체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년 전부터도 업체명을 다 뺐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제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는 것이고, 아니면 모르는 것이고요.

〈○○○ 주무관〉

○ 네, 그렇죠.

〈○○○ 위원〉

○ 재판이 계속 중인데 저희가 공개하라고 하면 어떤 영향이 미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법률지원팀 같은 데하고 자문을 혹시 구해보셨습니까?

〈○○○ 주무관〉

○ 아니요. 아직 구해보지 않았습니다.

〈○○○ 위원〉

○ 저희가 공개하라고 하면 제가 상대방 변호사라면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대법원에 청구자료를 제출할 것 같네요.

〈○○○ 위원〉

○ 저는 7호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7호보다 아까 말씀하신 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좀 기다려보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비공개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재판이 진행중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이 정보는 재판의 소송과 관련된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중간합니다. 4호를 사유로 비공개하는 것보다는 아예 결정을 유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 주무관〉

○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일단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현상 유지하는 의미에서 원 결정처럼 영업상의 비밀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의 위법행위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개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송에 걸려있으니까 법관들의 판단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현상유지 한다는 의미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 저는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

○ 7호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

○ 네.

〈○○○ 위원〉

○ 사실 저도 공개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1심 판결이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하네요. 결국에는 공개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저는 이 건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해석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7호에 4호를 더해서 비공개로 일단 의견은 드리겠습니다만 찝찝하네요.

○ 그러면 집계 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72호는 기각 결정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위원〉

○ 찝찝한 결정이네요.

〈○○○ 위원〉

○ 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 위원〉

○ 저도 공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개 결정하면 재판이 애매해 질 것 같아서요.

〈○○○ 주무관〉

○ 이 심의회가 자문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공개의견을 주셔도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로 결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 의안번호 2018-74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거하여 내부감사로 징계 처리한 현황(비리내용, 징계수위, 수집경로, 조사기간, 변호인 동행여부 등)

※ 회의내용 중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74호 소방감사담당관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소관부서 주무관님은 소속, 직,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위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소관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74호 소방감사담당관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의거 내부감사로 징계 처리한 현

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개인정보 등 관련법규에 의거 비공개로 정해진 정보 및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호제1항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8조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이름, 주민번호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며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주무관님은 방금 간사가 설명한 안건설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 주무관〉

○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 위원님께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지금 이 안건에서 형사소송법 196조가 왜 나왔을까요?

〈○○○ 주무관〉

○ 청구인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기재했는지 모르겠는데 형사소송법 196조와 전혀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징계사실이 관보나 이런 데에 공개가 됩니까?

〈○○○ 주무관〉

○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됩니다. 개인의 명예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

○ 그런데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알리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보통 징계 관련서류들은 보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주무관〉

○ 제가 알기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것이 '90년부터니까 30년 내용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러면 지금 관련자료는 적어도 2010년 것부터는 있겠네요?

〈○○○ 주무관〉

○ 징계대장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징계대장 안에 이분이 열거하신 항목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부분 없는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정보부존재로 할 것인가를 고민했었는데 청구인이 의도한 바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징계대장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처리하고요, 나머지 요구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부존재로 명시해서 답변했습니다.

〈○○○ 위원〉

○ 어쨌든 문서 보관기간 내인 2010년 정도까지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지금 이분이 청구했던 내용 중 대다수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징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업무를 하고, 조사보고서가 작성이 되고요, 징계의결요구서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징계의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구한 부분은 대부분 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해당 건별로 소방재난본부 산하 모든 소방서에서 각기 달리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췌를 해야 되고, 그것을 통제나 등록하는 시스템은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

○ 일일이 문서를 찾아서 수작업을 해야 되네요?

〈○○○ 주무관〉

○ 그렇죠. 문서 중에서도 기록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내용에 기록이 된 것도 있지만 '수집경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위원〉

○ 징계대장은 어떤 항목이 기재됩니까?

〈○○○ 주무관〉

○ 징계대장은 징계처분일자, 대상자의 생년월일, 주민번호, 징계처분, 처분일자가 있고, 위반 법규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품위손상이면 품위손상 정도로만 간단하게 나옵니다.

〈○○○ 위원〉

○ 그리고 징계결과도 나오겠죠? 견책이든지 정직이든지,

〈○○○ 주무관〉

○ 네. 징계의 양정들이 나오는 것이죠.

〈○○○ 위원〉

○ 그 정도만 공개할 수는 없을까요?

〈○○○ 주무관〉

○ 그런데 이분이 요구한 것이 공금횡령, 폭행, 음주인데 그 부분을 여기서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

○ 대장에서는 품위손상만 있고 공금횡령으로 품위손상인지는 여부는 모른다는 것이죠?

〈○○○ 주무관〉

○ 그렇죠. 청렴의 의무 위반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 대상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 주무관〉

○ 훈계까지 포함한다면 1년 평균 1,000건이 훨씬 넘죠.

〈○○○ 위원〉

○ 훈계도 징계대장에 들어갑니까?

〈○○○ 주무관〉

○ 그것은 징계대장에 없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요.

〈○○○ 위원〉

○ 청구인하고 의논해서 징계대장에서 개인정보 항목을 지우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징계일자, 징계사유, 징계결과, 이 정도 공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 주무관〉

○ 그것은 본인이 요구한 부분하고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 위원〉

○ 본인하고 협의를 한다면 공개할 수 있을까요?

〈○○○ 주무관〉

○ 이름 지우고 위반법규나 성실의 의무냐,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냐, 이 정도는 얼

마든지 공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청한 부분하고 전혀 괴리감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위원〉

○ 여기 청구내용은 내부감사입니다. 내부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이나 그런데 기록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이렇게 나와 있는 기록들은 없습니다. 내부감사라는 게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 업무적인 감사는 이에 해당이 안 되고요, 폭행이나 음주 같은 경우는 경찰서, 사법기관에서 통보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한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감사라는 표현 자체도 합당치 않고요.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

○ 청구인이 청구한 것이 5가지로, 내부감사 ‘비위내용’, ‘징계수위’, ‘징계수집경로’, ‘징계조사기간’, ‘징계 시 변호인 동행여부’인데, 어떤 정보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알려주려면 새로 정보를 다 생성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 주무관〉

○ 생성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전 기관에서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뒤져서 다 발췌를 해야 되고, 그 중에 일부 내용인 ‘변호인 동행여부’ 같은 경우는 조사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투서, 고발 같은 경우도 제보를 한 사람의 개인정보이고, 그 사람을 제3자가 보거나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서에 웬만하면 넣지 않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소청을 하게 되면 저희 조사 결과보고까지 상대방한테 제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상대방을 인지를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뺍니다.

〈○○○ 위원〉

○ 징계수위와 관련해서는 징계 종류별로 통계를 내서 관리하시지는 않습니까?

〈○○○ 주무관〉

○ 통계는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면부터 시작해서 견책까지 2017년도에 몇 명인지 정도는 관리를 합니다.

〈○○○ 위원〉

○ 사유별로 아마 분류될 것 같은데요.

〈○○○ 주무관〉

○ 사유별로는 거의 잘 안 되어 있고요. 사유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위손상이냐,

〈○○○ 위원〉

○ 징계 종류별로는 있다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품위손상에 견책 몇 명, 파면 몇 명, 이런 통계는 있습니까?

〈○○○ 주무관〉

○ 그 정도는 있죠. 그 정도는 있는데 이 분이 요구한 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 위원〉

○ 그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정보라는 말씀이시죠?

〈○○○ 주무관〉

○ 저희가 통계관리를 하니까요.

〈○○○ 위원〉

○ 비공개를 하실 때 비공개 정보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 둘을 명확히 구분은 안 하셨죠?

〈○○○ 주무관〉

○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징계수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이 분이 이의제기 시에 이름, 개인정보를 블록 처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결국은 전체 세부적으로 목록을 만들어서 달라는 얘기이고, 그것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 위원〉

○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주심위원님 혹시 정리되셨으면 의견 주시죠.

〈○○○ 위원〉

○ 사실 이 정보는 사실상 부존재 정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공을 하면 되기는 하겠습니다

마는 기존에 있는 정보를 가공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가공한다 하더라도 청구내용 중에 1, 3, 4, 5호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는 상황이 돼서 청구인의 요구를 만족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아주 조그만 청구이익을 위해서 큰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존재를 이유로 저는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일단 형사소송법 196조에 의거한 내부감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1, 3, 4, 5 이런 정보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각각의 사람에 대한 1번부터 5번까지를 표로 만들어서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2번 '징계수위' 같은 경우는 징계수위마다 통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2번을 딱 떼어놓고서 제공하는 것도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2번 '징계수위'가 완전히 없는 정보라고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다만 애초에 청구취지를 충분히 유추해 보면 각각의 징계수위별 공금횡령, 폭행, 음주가 아닌 다른 사항에 대한 징계까지 통계자료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일단 저도 부존재 문서로서 기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이게 부분적으로라도 완전 다 부존재인 자료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형태의 자료는 없겠지만, 그 중에 일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서가 있으니 일일이 발췌해야 되는 자료 말고 중간단계의, 예를 들어서 징계수위별로 숫자만 나온 자료 말고 그것보다 약간 상세한 자료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주무관〉

○ 저희가 소방재난본부 내에 기관이 총 30개 가까이 있습니다. 각 소방서만 해도 24개 군데입니다. 과거부터 데이터 중에 청구인이 요구하는 목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일이 뽑아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법령상 정해져 있는 징계대장입니다. 대장에서 품위손상이냐 성실의 의무 위반이냐를 구분을 해서 통계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요구하는대로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는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설령 이 데이터를 다 뽑는다고 하더라도 수 많은 인력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될 우려성이 높은 사실입니다.

〈○○○ 위원〉

○ 조사범위가 '각 지방청 각 도 본부, 각 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 주무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서울 것만 갖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구인이 각 시·도에다가 동일하게 요청을 했는데, 대부분 부존재 처리했고요, 일부는 저희처럼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비공개와 부존재가 동시에 나간 데가 있습니다.

〈○○○ 위원〉

○ 서울시가 각 지방청 각 도 본부까지 관리할 수는 없죠.

○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지금 1, 3, 4, 5는 당연히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고민이 2번인데요, 청구인이 '징계수위'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은 징계 종류별를 의미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마저 공공기관이 통계를 내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청구인의 취지가 사실 구체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징계의 종류별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2번의 취지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번은 징계 종류별 통계를 공개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부존재로 해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 위원〉

○ 저도 완전 비공개보다는 부분공개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방 얘기하신 징계수위 관련된 통계는 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징계 종류별 통계가 되겠죠.

〈○○○ 주무관〉

○ 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

○ 그러면 3대1이니까 저는 그냥 의견의 다양성을 위해서 기각 의견입니다.

〈○○○ 위원〉

○ 집계 결과 참석위원 4명 중 3명이 이의신청 건을 부분인용 한다는 의견이므로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청구내용 중에 2번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부분인용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74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주무관〉

○ 수고하십시오.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8-73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여성·건강카페 조성사업 관련 지원대상 선정조건 해당 제출문서, 지원금 사용증빙서류 및 영수증

※ 회의내용 중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의안번호 2018-73호 여성정책담당관 소관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소관부서 팀장님이십니까?

〈○○○ 주무관〉

○ 아닙니다. 저는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에 ○○○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부득이 실·국 회의로 저희 팀장님께서 참석하시지 못해서 제가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원〉

○ 간사는 소관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73호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여성·건강카페 조성사업의 화음까페 관련 설치 당시 선정공고문, 선정조건 해당 제출문서, 설치 시 및 매년 지원한 내역과 증빙서류

및 영수증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화음까페 설치 당시 선정공고문, ○○ 설치부터 만료까지 모든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선정조건 해당 제출문서, 사용증빙서류 및 영수증에 대해서는 직무와 상관 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유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사생활과 무관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방금 들으신 안건 설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주무관〉

○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청구내용이 1번이 선정공고문이고, 2번이 제출문서, 그러니까 지원할 때 제출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겠죠? 3번이 지원금내역, 사용증빙서류, 영수증, 4번이 설치 후 매년 지원한 내역과 사용증빙자료인데 이 중에 일부 부분공개를 하셨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1번하고 모든 지원내역은 공개를 하셨고요. 그러면 사용증빙서류와 영수증은 아예 제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주무관〉

○ 제가 그 부분은 부존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영수증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와 관련됐다고 생각이 돼서 비공개로 잘못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 상정을 드릴 때는 확인 결과 부존재로 이 부분 의견 드렸습니다.

〈○○○ 위원〉

○ 그러면 3번, 4번 중에서 3번에 지원금 내역, 4번에 설치 후 매년 지원내역은 공개가 됐고, 3번 후단부분에 사용증빙서류 및 영수증, 4번 후단에 사용증빙자료는 부존재인 것이죠?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러면 2번 선정조건 해당 제출문서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만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 주무관〉

○ 저희가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아파트 주민들 간 화합 도모를 위해서 자치구 추천으로 공간 추천을 받아서 선정심의를 거치고 협약 체결하고 최종 평가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SH가 공간 마련에 도움을 주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시에

남아있는 것은 공간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 건이 있습니다. 동대표회의나 주민동의서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입주자대표 회의록인데,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있고요. 보조금은 이미 사용내역은 청구인에게 드렸고, 영수증, 증빙서류는 자치구에서 정산결과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을 부존재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 지금 선정조건 해당 제출문서 2번이 선정공고문을 보면 자치구 추천서, 사업제안자 소개, 사업계획서, 공간확보 증빙서류, 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사본인데, 제목만 놓고 보면 선정조건 해당 제출문서이지만 지원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고문 상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5개의 이 제출서류는 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 주무관〉

○ 공고문에 요구서류를 저희가 넣기는 했는데 사실 남아있는 것은 공간사용계획이나 공간이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남아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치구나 SH공사 마포권역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해 알아봤지만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현재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입주자대표 회의록입니다.

〈○○○ 위원〉

○ 지금 이 5가지 제출서류 중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 주무관〉

○ 자치구 추천서랑 사업계획서입니다.

〈○○○ 위원〉

○ 그러면 그 자치구 추천서하고 사업계획서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십니까?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사업계획서 안에는 개인정보 같은 것이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 주무관〉

○ 네,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만 결정에 따라서 그 부분은 확인하고 공개할 여지가 있습니다.

〈○○○ 위원〉

○ 지금 이 자료가 저희에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 위원〉

○ 나머지 3개는 누가 갖고 있는 것이죠?

〈○○○ 주무관〉

○ 저도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정산작업을 맡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전임자에게 확인을 해 봤는데 참고인이 요청하신 자료는 없고요.

〈○○○ 위원〉

○ 제가 청구인이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제출서류가 5가지 종류인데 나머지 3개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폐기를 시켰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접수 받았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 주무관〉

○ 이 사업이 크게 두 번 나누어서 심사가 됐는데, 첫 번째는 마포를 포함해서 네 군데 선정 시에는 자치구 추천을 받아서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체결이 됐고, 두 번째 선정했을 때의 공고문에는 요구서류에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확인을 해보니 이런 장소사용승낙서나 무상임대협약체결서가 확인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는 사업내용을 위주로 심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주무관〉

○ 아니요. 그 제출서류가 요구는 되어 있었는데 자치구 추천서 안에 장소공간이나 이용객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용상 확인했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 위원〉

○ 자치구 추천서에 만약에 자치구의 어떤 주민센터에 어떤 공간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은 그 내용인 것이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승낙서, 체결서, 이런 정식의 문서를 지금 요구하는 있는 겁니다.

〈○○○ 주무관〉

○ 당시에 SH공사랑 마포권역고용센터랑 화음까페가 MOU를 체결하고 마포구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SH가 공간마련에 도움을 주었고 마포권역주거복지센터에서는 컨설팅 지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SH에 정식적으로 문의를 드렸었는데도 SH도 오래된 사업이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확

인이 어렵고, 대신에 MOU협약서라도 보내줄 수 있다고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위원〉

○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주무관〉

○ 15, 16년입니다.

〈○○○ 위원〉

○ 청구인은 제대로 선정됐는지를 보고싶은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관리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록을 통해 동의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위원〉

○ 1번부터 5번까지 서류를 내야지만 뽑히는 것인데, 단체에서 지원하면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있으니 와서 보라고 하면서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동의서, 연대서명 이런 것들을 받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제가 왜 안 받았냐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존재한다라고 통보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해 보여서 그래요.

〈○○○ 위원〉

○ 청구내용을 보면 동대표회의 결과 포함이라는 부분이 이의신청시에 추가가 되었고, 원래 청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출서류에 이것들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애초 청구했던 4개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저도 그게 좀 의문입니다. 제출서류를 여성정책담당관에서 만약에 다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다 가지고 있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일부를 가지고 있고 일부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에 지원하려면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제출서류는 다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째로 서울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1번, 3번은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 주무관〉

○ 그 부분은 청구인이 얘기하신 동의를 받았느냐의 여부,

〈○○○ 위원〉

○ 그게 아니고, 마을중심 여성카페 조성사업 공모 시행 공고문 2페이지 8번에 제출서류라고 해서 동그라미 5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를 서울시가 다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사업신청을 받았을 때 이 5가지 서류가 있어야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 주무관〉

○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공간마다 사업계획서랑 결과보고서가 있고요. 지금 공고문은 2차 선정할 때의 공고문이고요, 1차 때는 공고문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치구 추천을 받아서 현장실사,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된 4곳이고요. 그때는 요구된 서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는데, 1차에는 이 청구인이 청구한 마포구가 들어가 있었고, 2차에는 마포구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공고문은 2차 때의 공고문이라는 것이고,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럼 1차 때의 공고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주무관〉

○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치구 추천 받아서 최종 네 곳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공고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합니까? 공고문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주무관〉

○ 1차인 ’15년 초 방침서를 보면 계획수립 통보, 자치구 수요조사, 현장실사, 보

조금 교부, 자치구-운영사 간 협약체결로 추진일정이 나와 있고, 사실상 1차때는 공고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 1차 때는 자치구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 것이죠.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서류는 자치구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많네요. 그렇죠?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서울시가 그것을 결정하면서 자치구에서도 뭔가 서류가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추천서 안에 공간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왔습니다.

〈○○○ 위원〉

○ 추천서 한 장만 있고 추천서에는 부대서류 같은 것은 없고,

〈○○○ 주무관〉

○ 네. 공문상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러면 1차 관련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료가 1번과 3번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럼 2차와 관련해서는 5개를 다 갖고 있으시고요?

〈○○○ 주무관〉

○ 2차 때는 심의회 공고를 통해서 접수 받은 사업설명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

○ 사업은 1차, 2차로 되어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화음까페라고 해서 1, 2차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렇죠?

〈○○○ 위원〉

○ 네. 답을 할 때 1차와 2차를 나누어서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

○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 위원〉

○ 1차에서 선정된 네 곳이 마포구 외에 세 곳이 더 있을 텐데요,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증빙서류가 없습니까?

〈○○○ 주무관〉

○ 네. 지금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 위원〉

○ 1차 관련해서 공고문이나 이런 것은 마포구는 갖고 있습니까?

〈○○○ 주무관〉

○ 공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추천서가 공간지원에 대한 내용을 많이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1차 때는 공개적인 공모의 절차가 아니라 시와 자치구 사이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죠?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이 8개 사업에 대한 서류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죠?

〈○○○ 주무관〉

○ 전화도 해 봤는데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마포구이고요. 다른 자치구에 대한 내용은 사실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 위원〉

○ 어쨌든 청구서에 보면 '화음까페 설치 당시' 이렇게 되니까 8개를 다 공개를 해야 되겠는데요.

〈○○○ 위원〉

○ 2차 관련해서는 공고문이 존재하고 그것은 이미 공개가 됐고, 2차에 대해서는 1번부터 5번 서류가 있으십니까?

〈○○○ 주무관〉

○ 사실 2차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마포구에 워낙 신경을 쓰느라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2차 때의 그 내용이라면 제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원〉

○ 만약에 2차에서 또 부존재한 서류가 있다면 저희가 부존재하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애매한 상황이어서요.

〈○○○ 주무관〉

○ 네. 2차 서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추가로 요청하시면 자치구를 통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 위원〉

○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굳이 자치구한테 서류를 받아서 공개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

○ 2차에서의 제출서류는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 위원〉

○ ○○○○○○ 아파트단지 내에 화음카페가 설치되었고, 청구인도 주민인 것인데 지금 어떤 갈등이 있는 겁니까?

〈○○○ 주무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화음카페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부동의를 했던 분 중에서 다시 한 번 확인차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리고 국고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쓰여진 상세내용이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 주무관〉

○ 상세내역은 제가 이미 공개를 했는데 이분이 요구하신 것은 세부영수증은 구에서 갖고 있습니다. 결과보고 정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은 바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 방금 공개 가능하다라고 하신 정보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화음까페 지원내역 이 한 장짜리보다 더 자세한 정산내역이 있다는 것이죠?

〈○○○ 주무관〉

○ 마포구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까페에서 지원 받은 내역에 대한 사용처, 사용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영수증은 없고요?

〈○○○ 주무관〉

○ 영수증은 없습니다.

〈○○○ 위원〉

○ 사용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 주무관〉

○ 사용지출 증빙서류는 주민과 자치구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자치구에 이미 제출했고요. 사용증빙을 다 하고 세부사용내역을 시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는 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데 그 증빙서류, 영수증 부분이 공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 그것은 구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러면 정리를 해 볼까요? 청구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1번 화음까페 설치 당시 선정 공고문은 1차는 부존재, 2차는 이미 공개가 됐고요. 2번에 선정조건 해당 제출문서는, 1차에 공고문이 없으니 제출서류가 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서울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치구 추천서하고 사업계획서라고 하셨고, 이 중에 개인정보가 혹시나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주무관〉

○ 네,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 위원〉

○ 다른 사유는 지금 서울시로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신 것이고요.

〈○○○ 주무관〉

○ 네.

〈○○○ 위원〉

○ 선정조건 해당 제출문서는 2차는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것

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것이고요? 맞나요?

〈○○○ 주무관〉

○ 확인이 필요하지만 제가 남아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하겠습니다.

〈○○○ 위원〉

○ 3번에 지원금 내역은 이미 공개를 했고, 사용증빙서류, 영수증은 부존재이고요. 4번 설치 후 매년 지원내역은 공개했고 ,사용증빙자료는 부존재입니다. 다만 마포구에서는 받은 사용내역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것이죠?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2번 선정조건 해당 제출문서는 부분공개가 되겠고 나머지는 부존재로 다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결론은 어쨌든 부분인용이 되겠습니다. 선정조건 해당 제출문서 중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

○ 다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집계 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 건을 부분인용 한다는 의견이므로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73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8-72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시정권고 통보 (주)○○○○뱅크’ 결재문서

〈○○○ 위원〉

○ 저는 두 번째 심의했던 것을 의견을 좀 바꿀 수 있나 합니다.

〈간사〉

○ 소신껏 의견을 내시고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회의 끝나기 전이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심의회는 공개의견이더라도 또 최종결정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저는 공개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

○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류하자라고 했었는데,

〈○○○ 위원〉

○ 이 건은 애초에 서울시가 비공개로 한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 위원〉

○ 그리고 이 업체가 폐업했지 않습니까?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판단할 때 폐업여부는 영향을 안 미치나요?

〈○○○ 위원〉

○ 폐업하더라도 계속 장사는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 위원〉

○ 심의결과까지 바꿔도 상관없습니까?

〈간사〉

○ 의결을 다시 하셔도 됩니다.

〈○○○ 위원〉

○ 왜냐하면 저도 사실 서울시가 애초에 왜 이것을 비공개 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판결까지 기다려보자는 의미에서 기각의견을 냈던 것이어서,

〈○○○ 위원〉

○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게 좀 그래요.

〈간사〉

○ 소송이나 행정심판과 별개로 이의신청 건 자체를 심의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

○ 그렇죠. 완전 별개의 그것이어서, 저도 공개의견으로 바꾸겠습니다.

〈○○○ 위원〉

○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것은 공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 엄연히 보면 그 반대편에 소비자의 알권리가 들어가 있는데, 특히 할부거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정말 찝찝한 부분입니다.

〈○○○ 위원〉

○ 네. 시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도 특히 시정권고는 더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공개로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 위원〉

○ 그런데 공개로 하는 것이나 비공개로 하는 것이나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것을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이 재판에서는 이 업체만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은 더 명확하게 내줄 것 같습니다.

〈○○○ 위원〉

○ 재판에서는 지금 현재 영업 중인 업체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르게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 위원〉

○ 그러면 우리도 공개로 합시다.

〈○○○ 위원〉

○ 네, 공개로 결정 하겠습니다. 내심 이것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재판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영향으로 미칠 수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 그러면 이 사안은 7호에 의해서 비공개된 것인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개로 하겠습니다.

○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 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인용 결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72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수고하셨습니다.